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1344호 2018. 7. 23.(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공 고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8

기 타

○ 시정알림판 ----- 76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2018-10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 7. 23.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54	삼일로9번길 9	2018. 07. 23.	건물멸실
55	삼일로9번길 9-1	2018. 07. 23.	건물멸실
56	삼일로9번길 11	2018. 07. 23.	건물멸실
57	삼일로9번길 11-1	2018. 07. 23.	건물멸실
58	삼일로9번길 11-2	2018. 07. 23.	건물멸실
59	삼일로9번길 11-3	2018. 07. 23.	건물멸실
60	삼일로9번길 13	2018. 07. 23.	건물멸실
61	삼일로9번길 13-1	2018. 07. 23.	건물멸실
62	삼일로9번길 13-2	2018. 07. 23.	건물멸실
63	수문로 42-3	2018. 07. 23.	건물멸실
64	수문로 42-4	2018. 07. 23.	건물멸실
65	영산로 533	2018. 07. 23.	건물멸실
66	영산로 535	2018. 07. 23.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8-995호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3.

목 포 시 장

1. 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본조신설 2017. 12. 29.)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2018. 5. 8)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 업무 절차 및 서식에 관한 규정을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맞춰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규칙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1조~제3조)
- 고충민원의 신청, 처리절차, 결과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10조)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제15조)
-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통보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제21조)
-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제24조)
- 각종대장 및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안 별지 제1호서식~제44호 서식)

3.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57조, 제76조, 제77조, 제84조, 제89조, 제121조, 제14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83조~제87조, 제92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05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사항 : 없음

9. 입법예고 : 2018. 7. 23. ~ 2018. 8. 13. (21일 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전라남도 세정과-18029(2017. 12. 18.)호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기본안 송부 및 1093(2018. 1. 29.)호

11. 기타 참고사항 : 없음

1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3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

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한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결과(의견)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결과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연장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 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일시 중지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 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제22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 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기

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에 대한 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채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채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채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채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채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약)				
00과 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	--------	--------	--------	--------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위와 같 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부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21조제4항(제5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1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1회		
		2회		
		3회		
	분납금액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5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6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 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체납처분유예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신청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 신청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체납처분유예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 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결정 통보
[] 체납처분유예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과세년월	세액
			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된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1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2017.12.26.>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12.26.>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2017.12.29.>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전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 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5조(채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채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채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002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3.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법제처) 발굴 과제
 -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산정기준(안 제4조제4항 개정)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 (기존) 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
 - (개정)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2017.12.5.)

나. 점용료의 조정(안 제5조제1항 개정)

- 2년 이상 도로 점용 시 해당연도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의 점용료 산정방식
 - (기존)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개정) 전년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개정(2016.11.15.)

다. 소액부징수(안 제6조 개정)

○ 소액점용료 기준

(기존) 점용료 산정액이 5,000원 미만

(개정) 점용료 산정액이 10,000원 미만

라. 점용료의 감면

○ 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전액)

○ 안 제7조제6항 신설

-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추가(1/2)

3. 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계법령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기간 : 2018. 7. 23. ~ 8. 13.(21일간)

10.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첨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건설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8-358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건설과(☎ 061-270-8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을 “**각각 달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을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6조에 “**5,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주출입구 접근로**”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로 하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를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6항.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호 중 “**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을 “**각각 달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한 토지가격의 기준은 인접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u>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u> 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u>각각</u> <u>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u> <u>가중평균가격</u> 으로 한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 ①시장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u>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u> ② (생략)	제5조 (점용료의 조정) ①----- ----- ----- ----- <u>100분의 10이상</u> <u>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u> <u>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u> <u>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u> 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소액 부정수) 시장은 제4	제6조 (소액 부정수) -----

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신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 1
0,000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3. -----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⑥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1. -----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별표 2] (생 략)

--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삭 제>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시 정 알 림 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예·스포츠 체험활동 안내



- 기 간 : 4월~12월 상시
- 신청대상 : 센터 이용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으로 함께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 장 소 : 센터교육실, 인근영화관, 공연장, 공방, 스포츠 활동 시설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 ☞ 위 치 :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14, 목련아파트 복지동 2층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61-284-0924

「2018 목포시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 접수

- 접수기간 : 2018. 7. 13.(금)~8. 31.(금) 18:00까지
- 추천대상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시민, 법인·단체
 - 특정분야의 국내·외 활동으로 목포시를 빛낸 내·외국인
- 추천부문 :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 추 천 자 : 목포시의회 의원, 동장, 각급 기관·단체장, 개인
 - ※ 개인의 경우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
 - ※ 신청서류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확인



자치행정과 ☎ 061-270-3237

2018 목포항구축제 재능기부자 모집

- 모집기간 : 2018. 7. 19.(목)~8. 19.(금)
- 활동기간 : 2018. 10. 5.(금)~10. 7.(일)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누구나)
- 모집분야
 - 공 연 : 노래, 댄스, 밴드공연, 국악, 양상블 등 문화예술 공연(15~30분 공연)
 - 프로그램 : 풍어파시길놀이 참가자, 캘리그래피,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 체험프로그램 부분
 - 축제운영 : 축제 사진&동영상 촬영, 수상안전요원 등
 - ※ 이외 다른 재능기부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목포시청 & 축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홈페이지 : 목포시청(www.mokpo.go.kr ⇒ 고시/공고 게시판), 항구축제(www.mokpofestival.com ⇒ 공지사항)
 - 이메일 : clef360@korea.kr, FAX : 061-270-8569



관광과 ☎ 061-270-8442

시 정 알 림 판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 대 상 자 : 기초연금수급자
- 감면혜택 : 월 청구금액의 최대 11,000원(단 22,000원 이하 요금청구액은 50% 감면 9,000원)
※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 감면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신분증 지참)
 -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114)
- 참고사항
 - 본인 명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
 - 중복 감면 혜택 불가
(예 :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중복 감면 불가)

노인장애인과 ☎ 061-270-8605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사전 예매 안내

- 신청기간 : 2018. 8. 20.(월)까지
- 입장요금



구 분		가 격		적용범위
종류	대상	사전예매	본판매	
보통권	성인	8,000	10,000	· 성인(만19~64세) ※ 쿠폰(3,000원) 지급
	청소년	4,000	5,000	· 중·고등학생(만13~18세)
	어린이	3,000	4,000	· 어린이(만7~12세)

- 신청방법
 - 온라인 : 티켓링크 1588-7890(www.ticketlink.co.kr)
 - 오프라인 : FAX(061-280-5865)
☞ 신청서식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sumukbiennale.org)
- 운영기간 : 2018. 9. 1.(토)~10. 31.(수)
-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시간은 17:30까지) ※ 월요일 휴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운영부 ☎ 061-280-5882